**[붙임 1]**

**음주자 격리시설 내 체류자 관련 규정**

**§ 1**

1.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하기 내용에 대해 즉시 안내받아야 한다.

1) 본 규정에 명시된 자연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음주자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음주자 격리시설 체류 규정이 명시된 구류 보고서 서명을 통해 해당 체류 규정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

2) 음주자 격리시설 내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 (영상 관찰 및 기록 사용 포함)

2. 폴란드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연인이 음주자 격리시설에 구류된 경우, 통역사를 통해 음주자 격리시설 체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공된다.

2a. 음주자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이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 수단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19일 발효, 법률저널 2023년 [제20호](https://sip.legalis.pl/document-view.seam?documentId=mfrxilrtg4ytqnbsga2daltqmfyc4nrwgq3tmmjzg4)) [제2조 1항 1목](https://sip.legalis.pl/document-view.seam?documentId=mfrxilrtg4ytqnbsga2daltqmfyc4nrwgq3tmmrqha)에 해당할 경우, 격리시설 구류와 관련해 폴란드어 수화 통역사, 수화 시스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수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3. 격리시설 구류자가 의식 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울 경우, 1조에 명시된 정보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 안내되어야 한다.

4. 격리시설 구류자의 의식 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 폴란드 형사소송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 구류에 따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 안내되어야 한다. 구류자는 구류 보고서 서명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

**§ 2**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퇴실할 수 있다.

1) 구류 사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법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는 경우

3) 검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4)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만료되기 전, 재판 전 구류 요청과 함께 법원의 처분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

5) 법원 처분 후 24시간 이내에, 재판 전 구류 적용 결정이 당사자인 자연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 3**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자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퇴실할 수 있다.

1) 구류 후 24시간 이내에, 술에서 깬 경우

2) 해당 자연인이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한 경우

**§ 4**

1.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경찰의 구류자 건강검진 규정에 명시된 경우와 조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술을 깨기 위해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즉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사는 하기와 같은 진단을 한다.

1) 자연인이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데 대한 의학적 금기 사항 여부

2)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자연인에게 의학적 금기 사항이 있고, 해당 자연인을 의료 시설로 인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건강검진 거부 및 의료기관에 의뢰할 근거가 없는지 여부

4) 건강검진 거부 및 의료기관에 의뢰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5) 자연인이 복용해야 할 약물의 종류와 투여 방법

3. 제2조에 명시된 상황은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제2조 3항에 명시된 상황은 음주자 격리시설 구류 거부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5. 제2조 2항 및 4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음주자 격리시설에 인계된 자연인은 특수 위생 차량을 통해 운송된다.

6. 격리시설에서 진행된 건강진단 과정과 결과는 의사가 진료방문서에 기록한다.

**§ 5**

1.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자신의 성명, 아버지의 성명, 출생지, 거주지 또는 체류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1. § 5조 제2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영치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개인 영치품 서류에 기록된다. 해당 서류는 격리시설 구류자와 영치품 보관 절차를 진행한 경찰관이 서명한다.

2.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이 영치품 서류에 기록되며, 영치품 보관 절차 진행 시 참석한 호송 담당자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3. *(폐지)*

4.§ 5조 제2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보관된 물건은 격리시설 구류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7**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음주자 격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지정한 장소에 구류되며, 하기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1. 이성은 분리 구류된다.
2. 술에 취한 구류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구류자와 분리 구류된다.
3. 18세 미만 구류자는 성인 구류자와 분리 구류된다.

**§ 8**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에게는 하기와 같은 필수 정보가 안내된다.

1)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연인을 감독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3) 평일 기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공휴일 기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지정된 야간 시간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4) 사회적 공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5)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격리시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 의도된 목적에 따라 격리시설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7) 자연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 격리시설 시설 파손 또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 9**

1.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자신의 의복, 속옷 및 신발을 착용한다.

2. 착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생상의 이유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격리시설 구류자는 필요한 의복, 속옷, 신발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경찰조직 단위의 장이 지정한 격리시설 관리자가 내린다.

3. 하기의 경우 격리시설에 구류, 임시 구류 또는 형을 선고받은 자연인에게 교체용 임시 옷을 지급한다.

1) 테러 범죄, 특수 잔혹 행위,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조직 무장 범죄 집단에 가담했거나 가담 의혹이 있는 경우.

4. 격리시설 구류자에게 교체용 옷을 지급하고, 원래 옷을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

5. 구류자에게는 개인위생 유지에 필요한 위생용품(특히 비누, 수건 등)이 구류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된다.

6. 야간 시간 및 기타 시간대에 구류된 자연인에게는 매트리스, 베개, 담요(가을과 겨울에는 담요 2개) 및 침구(개인용 시트 2개와 베갯잇)가 제공된다.

**§ 10**

1.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에게는 다음이 제공된다.

1) 최소 한 번의 따뜻한 식사를 포함한 하루에 세 번의 식사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

a) 낮 동안 제공되는 식사의 열량은 경찰관 제공 식사 규정에 따라 폴란드 군사관학교 기준의 60% 이상, 즉 2,600kcal 이상이어야 한다.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경우 기준의 75% 이상, 즉 3,200kcal 이상이어야 한다.

b) 구류된 자연인을 위한 식사가 법무부 장관 산하 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준비되는 경우, 일일 식품 기준치 및 교도소에 수감된 자연인에게 제공되는 식단 유형에 관한 조항에 명시된 기준 열량이 적용된 식사가 제공된다.

c) d번에 따라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은 입실 시간 기준 최소 5시간 이후부터 다음 시간과 비율에 따라 식사가 제공된다.

- 7:00~8:00 아침 식사 - a번에 명시된 열량의 30%에 해당하는 식사

- 12:00~14:00 점심 식사 - a번에 명시된 열량의 40%에 해당하는 식사

- 18:00~19:00 저녁 식사 - a번에 명시된 열량의 30%에 해당하는 식사

d) 해외에서 호송된 자연인의 격리시설 입실 시간이 18:00~8:00 사이이나 c번에 명시된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입실 후 2시간 이내에, a번에 명시된 열량의 30%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는다.

e) 이송/호송 또는 호송대를 통해 인계되어 구류된 자연인이 c번에 명시된 시간 중 식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구류된 자연인은 첫 번째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f) 개인의 건강상 필요할 경우, 의사가 권장하는 식이요법이 적용된 식사가 제공된다.

2) 술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구류된 자연인에게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만 제공

3)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4)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위생시설 사용 및 위생용품 제공

5)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자연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종교적 물건 소지 허용

6)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자연인들의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종교 서비스 이용 가능

7) 언론 매체 자료 열람 가능

8)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자연인들의 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자연인의 자비로 구입한 담배 제품, 언론 매체 인쇄물, 개인 위생 유지를 위한 위생용품의 시설 내 소지 가능

9) 내무 담당 장관의 지휘를 받는 자연인의 사업장 및 운송 수단 내 담배 제품 사용에 관한 세부 조건 규정에 의거해, 흡연 행위가 경찰관의 격리시설 구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10) 수령 가능 물품

a) 구류자 참석 하에 직접 확인 후 수령 가능 - 개인 물품, 특히 의류, 신발, 드레싱용 붕대 및 위생용품이 담긴 소포

b)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동의를 받은 합의된 상황에서만 복약이 허용된다. 의사와의 합의에 따라 의사 또는 경찰관이 격리시설에 구류된 자연인에게 약을 지급한다.

11) 격리시설을 감독하는 경찰관을 통해 해당 격리시설을 관리하는 경찰조직 단위의 장에게 요청 및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 8목에 언급된 품목은 경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하루 1회에 한해 제공된다.

3. 제1항 1목의 d번, e번 상황에 해당하는 구류된 자연인에게는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 11 *(폐지)*

§ 12 *(폐지)*